

사회적협동조합 브라운

조합원 가입 약관

Membership Terms & Conditions

🐾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🐾

제정일	2024년 10월 24일
최종 개정일	2025년 12월 29일
적용 대상	사회적협동조합 브라운 전체 조합원
관련 규정	협동조합기본법, 사회적협동조합 브라운 정관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사회적협동조합 브라운(이하 '조합'이라 한다)의 조합원 가입에 관한 절차, 권리·의무, 탈퇴 및 제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조합 간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'조합원'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조합에 가입하고 출자금을 납입한 자를 말한다.
- '출자금'이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금전 또는 현물을 말하며, 1좌당 금액은 10,000 원으로 한다.
- '기본회비'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.
- '정관'이라 함은 사회적협동조합 브라운 정관(2024. 10. 24. 제정, 2025. 12. 29. 개정)을 말한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- ① 이 약관은 조합원 가입을 신청한 자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- ② 조합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약관 개정 시 총회 의결을 거쳐 시행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조합원이 개정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탈퇴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 2 장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

제4조 (조합원의 자격)

-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조합원이 될 수 있다.
- ②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격을 갖춘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.

제5조 (조합원의 유형)

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유형	자격 요건	최소 출자좌수
생산자조합원	조합의 유기동물 구조·보호·동물복지 개선 등 관련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자	100좌 이상
소비자조합원	조합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급받는 자	100좌 이상
직원조합원	조합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	100좌 이상
자원봉사자조합원	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	100좌 이상
후원자조합원	조합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금을 후원하는 자	100좌 이상

제 3 장 가입 절차

제6조 (가입 신청)

-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 1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
 2. 생년월일(단체의 경우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번호)
 3. 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, 이메일)
 4. 희망 조합원 유형
 5. 납입 희망 출자좌수(100좌 이상)
 6. 조합 설립목적에 대한 동의 여부
- ② 가입신청서는 조합 주된 사무소(경기도 용인시)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·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- ③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 (가입 심사 및 통지)

- ① 조합은 가입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의 자격 및 기재사항을 확인하고,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가입 여부를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.
 1. 제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 2.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불완전한 경우
 3. 이전에 제명된 사실이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
- ③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, 거절 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 (출자금 납입 및 조합원 자격 취득)

- ① 가입 통지를 받은 자는 가입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.
- ② 불가피한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2회에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.
- ③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날에 조합원 자격이 취득된다.
- ④ 출자금 납입 계좌 및 방법은 가입 통지 시 별도로 안내한다.
- ⑤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⑥ 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완료되면 출자증서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조합원에게 발급한다.

제 4 장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

제9조 (조합원의 권리)

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
1.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에 참가할 권리(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)
2. 임원 선거에 참여하고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
3. 조합의 사업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
4. 조합의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자료 열람을 청구할 권리
5. 총회 의결을 통한 잉여금 배당을 받을 권리(단,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 배당 불가)
6. 탈퇴 시 출자금 환급을 청구할 권리
7.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권리

제10조 (조합원의 의무)

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1. 조합의 정관, 규약, 규정 및 총회·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
2. 출자금 및 기본회비 등 경비를 성실히 납입할 의무
3. 조합의 사업을 적극 이용할 의무
4. 조합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
5.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 또는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지체 없이 조합에 고지할 의무
6. 조합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행정처분을 준수할 의무

제11조 (조합원의 책임)

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.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은 출자금을 초과하는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12조 (의결권 대리행사)

-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(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과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)이어야 하며, 1인의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 수는 1인에 한한다.
- ③ 대리인은 의결권 행사 전에 위임장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5 장 경비 납입

제13조 (기본회비)

- ① 조합원은 조합 운영을 위한 기본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기본회비의 금액, 납부 주기 및 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.
- ③ 기본회비는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.

제14조 (동물위탁관리비)

- ① 조합의 동물위탁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합원은 해당 서비스 이용에 따른 동물위탁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동물위탁관리비의 부과 기준, 금액 및 납부 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.

제15조 (과태금)

- ①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합은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②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.
- ③ 과태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.

제 6 장 탈퇴 및 제명

제16조 (임의 탈퇴)

- ①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.
- ② 탈퇴 의사는 서면으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, 통지가 접수된 날에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.

제17조 (당연 탈퇴)

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탈퇴된다.

1.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2. 사망한 경우
3.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

4.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

제18조 (제명)

-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 - 1. 출자금 및 경비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 - 2. 2년 이상 계속하여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
 - 3.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·행정처분·정관·총회의결·규약·규정을 위반한 경우
 - 4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② 조합은 제명 전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제명 결의 후 조합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9조 (출자금 환급)

- ① 탈퇴 또는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환급 청구권은 탈퇴(제명 포함)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, 청구권 행사 가능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.
-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출자금 환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, 채무가 있는 경우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.

제 7 장 개인정보 보호

제20조 (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)

- ① 조합은 조합원 관리, 사업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한다.
 - 1. 필수 항목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(전화번호, 이메일)
 - 2. 선택 항목: 직업, 반려동물 정보, 관심 분야 등
- ② 조합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조합원 관리 및 조합 사업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.
- ③ 조합원의 개인정보는 탈퇴 후 5년간 보관하며, 이후 지체 없이 파기한다. 다만,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보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한다.

제21조 (개인정보의 제공 금지)

- ① 조합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 다만, 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

외로 한다.

② 조합원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, 삭제를 조합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
제 8 장 기타

제22조 (분쟁 해결)

- ① 조합과 조합원 간에 이 약관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
-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에 결정에 따른다.
- ③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제23조 (약관 외 사항)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동조합기본법, 사회적협동조합 브라운 정관, 관련 규약·규정 및 총회·이사회에 의결에 따른다.

제24조 (시행일)

이 약관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사회적협동조합 브라운

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13-17, 1층 102호